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 근거 마련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57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대다수가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특수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고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 근거 마련

개정안은 통합교육 실시를 위하여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두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특수학교 등) ①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u><신설></u> <u><신설></u>	제15조(특수학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통합교육 실시를 위하여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두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법 제15조¹⁾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수학교를 두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²⁾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³⁾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음.⁴⁾

1)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①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 대한 시책 현황(자료: 교육부)

-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교원 통합교육 역량강화 등
-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1-5) 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 확대)
 - 통합유치원 놀이공간 개선 검토,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인력 배치 등
- 2025 특수교육 운영계획(Ⅱ.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통합교육 컨설팅, 순회교육, 장애 이해·인식개선 교육 실시, 인권지원단 운영, 교재교구 지원, 현장 지원자료 보급 등
- 2025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계획
 - 우선모집(최우선순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 재원 중인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8,853명 중 특수학교 유치원과정에 재원하는 유아는 1,012명(11.4%)이고, 일반 유치원의 특수학급에 5,803명(65.6%), 일반학급에 2,038명(23.0%)이 배치되어 있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중 88.6%에 해당하는 유아는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고 있음.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의 배치 현황】

(2024. 4. 1. 기준, 단위: 개, 명)

구 분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영아 포함)	유치원		합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학교 수	133개	1,252개	1,376개	2,761개
학급 수	317개	1,623개	1,822개	3,762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수	1,012명 (11.4%)	5,803명 (65.6%)	2,038명 (23.0%)	8,853명
특수교사 수	371명	1,687명	-	2,058명

자료: 교육부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 9. (생 략)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 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유치원 특수학급 현황】

(2024. 4. 1. 기준, 단위: 교, 급, 명)

구 분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유아
전체	1,252	1,623	5,803
국립	3	3	14
공립	1,248	1,619	5,785
사립	1	1	4

자료: 교육부

이에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의 대다수가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어서 유치원에 특수학교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특수학급을 두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필요한 교육적 요구를 적기에 충족시키고 개별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특수교육법 제27조⁵⁾는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에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 이하면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56조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교육을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치원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92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